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입신고 등)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

2. 상업송장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현황을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한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수입검사)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장부”를 “장부 및 서류”로 한다.

제30조 중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부”를 “장부 및 서류”로 하고, 같은 표 중 “장부명”을 “장부 및 서류”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한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 수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3일
목재수입 유통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FAX: )
수입신고 대행업자 (해당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FAX: )
신고내용	제품명	수종(목재의 경우만 적습니다)	모델 · 규격
	총 중량	순 중량	총 포장개수
	수량	단가	금액
	성분	품목번호 (HSK번호)	
	원산국	수출국	
	생산회사	주소	
	수출회사	주소	
	선박명	국내도착항	입항일 년 월 일
	보관창고 (전화번호: )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번호 (B/L번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2. 상업송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 수입신고확인증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발급번호		발급일		년	월	일
수입 신고 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주소				
제품명			수종 (목재의 경우만 적습니다)			
총 수량			총 중량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번호 (B/L번호)			
원산국			수출국			
생산회사			수출회사			
품목번호 (HSK번호)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제 품 내 용						
연번	제품명	성분	화물관리번호	수량	중량	
<p>「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b>산림청장</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업 실적 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m<sup>3</sup>, 톤)

목재생산업의 종류	원목의 수종 및 목재제품의 종류 (원산지/제조국)	생산량(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A-B)
		전월 실적	당월 실적(A)	전월 실적	당월 실적(B)	

끝.

### \* 작성방법

1. 원목생산업의 경우: 원목의 수종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을 적습니다.
2. 제재업의 경우: 목재제품의 종류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을 적습니다.
3. 목재수입유통업의 경우: 수입한 원목의 수종별 및 목재제품의 종류별 원산지(제조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을 적습니다.

발 신 업 체 명 의

직인

시행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만 수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657호, 2017. 3. 21. 공포, 2018. 10. 1. 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등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통보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며, 수입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목생산업 등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연간 생산·판매 등의 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판매 등의 실적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14조의2(수입신고 등)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1.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u></p> <p><u>2. 상업송장</u></p> <p><u>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p> <p><u>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현황을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u></p>

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4조의3(수입검사)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검사 결과

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①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24조(지도·감독)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  
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  
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  
3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  
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지도·감독) ① -----  
-----  
----- 장부 및 서류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보고) -----  
-----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  
서식의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  
함한다)-----.